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 11. 22. 장덕준 의원 외 5인
- 나. 회부일자 : 2019. 11. 25.
- 다. 상정일자 :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(2019. 12. 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장덕준 의원

1) 제안이유

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에도 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적용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.

2) 주요내용

- 상위법률의 제명 변경으로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을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안 제6조)

3)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- 2)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19. 11. 21.~ 11. 25.(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신준호)

가. 조례 개정 배경

본 조례와 관련 있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면서 보상금액 결정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부동산 가격 평가 산정 기준임에도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이를 별도 분리 제정됨으로서 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근거 법률 제명을 변경함.(안 제6조)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 법령인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상 부동산 가격공시가 일반 국민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이 신규로 제정(2016. 1. 19.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법률의 제정 시기(2016. 1. 19.)를 고려했을 때 시의성은 다소 떨어지나 지금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